

현실 확인:

구글은 디지털시장법(DMA)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7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시행을 앞두고, 구글은 규정 준수 계획에 대한 모호하고 대략적인 요약본을 공개하면서 자사는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DMA의 조항: 개발자는 더 낮은 가격에 대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 **제5(4)조:** “게이트키퍼는 업무상 사용자가 무상으로 그 핵심플랫폼서비스 또는 그 밖의 채널을 통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다른 조건에 따르는 것을 포함하여 제안을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사용자가 이 목적을 위하여 게이트키퍼의 핵심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최종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글의 규정준수 계획 내용: 개발자가 외부 사이트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막는 불법적 수수료 부과

- 개발자는 구글의 외부 혜택(External Offers) 프로그램을 통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후에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최초 2년 동안 구글은 자동 갱신 구독에 대해 12%의 수수료(최초 사용에 대한 수수료 5%와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 7%의 합)를, 기타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27%의 수수료(최초 사용에 대한 수수료 10%와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 17%)를 부과합니다. 2년이 경과된후, 구글이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개발자가 선택 해제하지 않는 한, 7% 또는 17%의 지속적인 서비스 요금을 부과합니다.

DMA의 조항: 개발자는 게이트키퍼 운영 체제에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 **제6(7)조:** “게이트키퍼는 서비스 제공자 및 하드웨어 제공자가 무상으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하드웨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3조(9)에 따른 지정결정에 기재된 운영체제 또는 가상비서를 통하여 접근하거나 제어하는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과 효과적인 상호운용을 위하여 해당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게이트키퍼는 업무상 사용자 및 핵심플랫폼서비스와 함께 제공되거나 이를 지원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체 제공자가

무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게이트키퍼가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운영체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능과 효과적인 상호운용을 위하여 해당 운영체제 또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능이 해당 운영체제의 일부인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

구글의 규정준수 계획 내용: 상호 운용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구글은 타사 앱스토어와 대체 결제 시스템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결제보다 운영 체제를 통해 결제할 때 더 많은 마찰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Android 상의 작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차별적 행위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사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DMA의 조항: 앱 내에서 구매할 때 소비자와 개발자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 **제5(7)조:** “게이트키퍼는 최종 사용자에게 게이트키퍼의 핵심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업무상 사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맥락에서 해당 게이트키퍼의 신원확인서비스, 웹브라우저 엔진이나 결제서비스 또는 인앱구매 결제서비스와 같은 결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기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업무상 사용자에게 이를 이용, 제안 또는 상호운용 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구글의 규정준수 계획 내용: 개발자에게 대체 결제 솔루션 수수료 부과

- 구글에서 개발자가 대체 결제 솔루션을 사용하려면 사용자 선택 청구(User Choice Billing, UCB)와 개발자 전용 청구(Developer Only Billing, DOB) 중 한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하는데, 두 프로그램 모두 추가 요구 조건과 수수료가 발생하며 어느 프로그램도 개발자들의 진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선택 청구의 경우 앱 개발자는 전체 구글 수수료인 30% 혹은 15% 중 4%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개발자 전용 청구의 경우 앱 개발자는 전체 구글 수수료인 30% 혹은 혹은 15% 수수료에서 단 3%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구글의 수수료와 불필요한 요구 조건은 개발자가 제5(7)조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마찰을 일으키고 의욕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DMA의 조항: 소비자는 앱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제6(4)조:** “게이트키퍼는 그 운영체제를 사용하거나 상호운용하는 제3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설치 및 효과적인 이용을 허용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게이트키퍼의 관련 핵심플랫폼서비스 이외의 수단으로 해당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구글의 규정준수 계획 내용: 이미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허위 주장

- 구글의 준수 보고서 요약본에는 **제6(4)조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문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글은 자사가 2024년 3월 7일 이전 부터 이미 이 조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구글은 타사 앱스토어를 기술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앱스토어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여러 장애를 조성했습니다.

DMA의 조항: 게이트키퍼의 행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 **제6(12)조:** “게이트키퍼는 업무상 사용자와 관련하여 제3조(9)에 따른 지정결정에 열거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온라인 검색엔진 및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한 업무상 사용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고 일반적인 접근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구글의 규정준수 계획 내용: 개발자에게 문제가 있는 서비스 수수료 부과

- 구글의 규정 준수 계획은 동일한 앱스토어 서비스를 사용하는 앱이 완전히 다른 약관에 적용받는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고착시키고 있으며, 이는 법의 목표와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 구글은 30% 혹은 15%의 수수료가 자신들과 앱 개발자 간의 “협상력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이것은 구글이 게이트키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